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65077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봉수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김정완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가단536885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1. 27.
판 결 선 고	2021.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2018. 10. 5. 체결된 80,000,000원에 대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와 C은 2010. 6. 7. '원고가 C에게 47,500,000원을 변제기 2010. 9. 30., 지
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484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
였다.

(2) C의 아들인 피고는 2018. 9. 21. E로부터 광주 북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
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85,000,000원에 매수하고, E에게 같은 날 계약금
15,000,000원, 2018. 10. 13.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계약금은 I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K,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2018. 9. 21. C의 계좌로 송금
된 28,000,000원 중 일부가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이고, 위 잔금은 이 사건 계좌에
서 E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된 것이다.

(3) 피고는 2018. 10.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H(주)에게 채권최고액이 129,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좌는 실질적으로 C의 것이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은 C의 것이었고, C은 2018.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중 8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증여하였는바(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28,000,000원, E 명의 계좌로 60,000,000원이 송금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원고는 그 중 80,000,000원에 관하여만 C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C과 피고 사이의 8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하고, 위 80,000,000원을 '이 사건 80,000,000원'이라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I로부터 이 사건 80,000,000원을 포함한 88,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C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좌가 실질적으로 C의 것인지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계좌가 실질적으로 C의 것이어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도 C의 것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1) 아래와 같은 사실은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이 법원의 L고등학교장

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결과, 이 법원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① C과 I는 중학교 동창이고, C은 I가 'M'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중장비 대여업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 C의 아들인 피고는 주민등록상 2017. 5. 30. 광주 남구 P에 전입하였다가 2018. 10. 4. 이 사건 아파트로 전출하였고,¹⁾ 이 사건 소장 부분의 2018. 11. 27. 위 P 주소지로 송달되어 C이 이를 수령하였는데, I가 2018. 9. 4. R에게 소유하고 있던 광주 남구 N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I의 주소로 위 P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계좌에서 C의 국세와 피고의 통신요금이 납부되었고, 그 외에도 이 사건 계좌에서 C과 피고 명의 각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이 이루어졌다.

③ C은 굴삭기를 소유하고 이를 이용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가 2016. 8. 16. 피고에게 굴삭기를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2016년 'C과 피고 사이의 위 굴삭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6가단 525917), 2017. 5. 1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7. 6. 6. 확정되었다. I는 2003. 3. 3.부터 L고등학교에서 조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조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위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1. 1. 'M'라는 상호로 중장비 대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현재까지 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Q에 관한 금융거래정보제

1) 원고가 2019. 11. 28. 제출한 주소보정서

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8. 10. 23. I에게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등으로 사용된 88,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가 1996. 8. 30.생으로 위 차용증서 작성 당시 만 21세에 불과하기는 하였지만,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185,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H(주)에게 채권최고액 129,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 외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다른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I로서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② I는 2018. 9. 4. R에게 광주 남구 N아파트를 227,000,000원에 매도하였다. I는 R로부터, ㉠ 2018. 9. 4. 계약금 22,700,000원을 지급받았고, ㉡ 2018. 10. 2. 중도금 50,000,000원을 I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입금받아 2018. 10. 2.부터 2018. 10. 10.까지 이 사건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 2018. 10. 31. 잔금 66,234,672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80,000,000원은 I 소유였던 위 아파트의 매도대금으로 보이는데, C이 위 아파트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계좌가 실질적으로 C의 계좌라면 이 사건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하고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송금할 특별한 이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잔금은 이 사건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다).

④ 이 사건 계좌에서 I가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광주 남구 N아파트의 관리비가 이체되었고, 그 외에도 이 사건 계좌와 I 명의 다른 계좌 사이에 다수의 입출금

내역이 있다.

⑤ I는 'M'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도 2003. 4. 23.부터 2010. 7. 30.까지 "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장비 대여업 등을 한 적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가 실질적으로 C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8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설령 이 사건 계좌가 실질적으로 C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이 사건 80,000,000원이 피고 명의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8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증여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지영

판사 박옥희

판사 김용태